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승인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설치등)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.

제3조 (사무과장)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두고 과장밑에 사무직원을 둔다.

②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 (전문위원) ①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 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

제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

부

칙

이 조례는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